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29
----------	-------

발의연월일 : 2025. 8. 19.

발 의 자 : 김은혜 · 고동진 · 김선교
조배숙 · 박성민 · 안상훈
김상훈 · 엄태영 · 김성원
인요한 · 권성동 · 서천호
윤상현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국내 자동차 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번 관세 조치는 완성차 및 부품업계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반에 수출 감소,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하여, 경쟁력 저하는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국내적으로는 반기업 입법 추진으로 인한 노조의 파업 빈도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은 해외 바이어 신뢰도 저하, 장기계약 축소, 해외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등으로 이어져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높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승용차를 2026년 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안 제10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4제1항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6월 30일까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020년 3월 1일 이후”를 “2026년 1월 1일 이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20년 2월 29일 이전에”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0년 3월 1일”을 “2026년 1월 1일 현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별소

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u>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u>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① ----- ----- ----- <u>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u>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u>2020년 6월 30일까지</u>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u>2020년 3월 1일 이후</u>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② ----- ----- ----- ----- ----- ----- ----- ----- ----- ----- ----- <u>2026년 12월 31일까지</u> ----- ----- ----- ----- <u>2026년 1월 1일 이후</u> ----- -----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u>2020년 2월 29일 이전에</u>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자동차일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u>2020년 3월 1일</u> 현재 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u>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u>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③ (생략)	----- ----- ----- -----. 1. <u>2025년 12월 31일 이전에</u>----- ----- ----- 2. ----- ----- <u>2026년 1월 1일 현재</u> ----- ----- ----- 3. ----- ----- <u>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u> ----- ----- ③ (현행과 같음)
---	--